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8.] [대통령령 제33597호, 2023. 6. 27., 일부개정]

- 고용노동부 (산업안전보건정책과-과태료, 적용범위, 공표, 지자체·이사회보고) 044-202-8809, 8810, 8813, 8815
- 고용노동부 (산업안전기준과-도급·안전조치, 인증·검사, 안전관리자-제조업) 044-202-8854, 8857, 8856
- 고용노동부 (산업보건기준과-감염병·석면, 건강진단, 작업환경측정·유해물질, 보건관리자·보건조치) 044-202-8876, 8874, 8878, 8875
- 고용노동부 (직업건강증진팀-휴게시설·고객응대, 미세먼지·고열, 직무스트레스·과로) 044-202-8893, 8895, 8894
- 고용노동부 (안전보건감독기획과-산재발생보고) 044-202-8910
- 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원과-교육, 산보위·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) 044-202-8928, 8927
- 고용노동부 (건설산재예방과-안전관리비·재해예방지도기관, 환산재해율, 안전관리자-건설업) 044-202-8942, 8939, 8940
- 고용노동부 (화학사고예방과-MSDS, PSM) 044-202-8971, 8967

제6장 유해·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

제74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
 - 가. 프레스
 - 나. 전단기 및 절곡기(折曲機)
 - 다. 크레인
 - 라. 리프트
 - 마. 압력용기
 - 바. 롤러기
 - 사. 사출성형기(射出成形機)
 - 아. 고소(高所) 작업대
 - 자. 곤돌라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
 - 가.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
 - 나. 양중기용(揚重機用) 과부하 방지장치
 - 다.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 - 라.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 - 마.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
 - 바.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(活線作業用) 기구
 - 사. 방폭구조(防爆構造) 전기기계·기구 및 부품
 - 아. 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 - 자. 충돌·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
 - 가.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
 - 나. 안전화
 - 다. 안전장갑
 - 라. 방진마스크
 - 마. 방독마스크
 - 바. 송기(送氣)마스크
 - 사. 전동식 호흡보호구
 - 아. 보호복

자. 안전대

차. 차광(遮光) 및 비산물(飛散物) 위험방지용 보안경

카. 용접용 보안면

타.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
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칙 <제33597호,2023. 6. 27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5조제3항,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